

#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실



## “친애하는 동료에게” 서신 (Dear College Letter): 괴롭힘(Harassment)과 협박 (Bullying) (2010년 10월 26일) - 배경, 요약 및 간략한 사실

### 학생 사이의괴롭힘과 협박이 주는 영향은?

- 학업성취도와 목표의식 저하
- 높은 불안감
- 자부심과 자신감의 상실
- 우울증과 심적 충격 후 스트레스
- 육체적 건강의 전반적인 악화
- 자해와 자살 생각
- 다른 학생들에 대한두려움 같은 학교 환경으로부터의 소외감
- 잦은 결석

### “친애하는 동료에게” 서신 (DLC)의 역할은?

- 교육부 (ED)의 민권 사무실 (OCR)이 시행하는 민권법률 중 협박과 차별적인 괴롭힘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함.
- 협박 (Bullying)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비행이 OCR이 집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별 금지 법령에 해당되는 책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함.
- Explains how student misconduct that falls under an anti-bullying policy also may trigger responsibilities under one or more of the anti-discrimination statutes enforced by OCR.

[OCR-00057-KO]

- 청소년 비행을 다룰 때 차별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학생의 민권 침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적당하거나 부적합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. 대학교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같이 차별 금지 법령에 대한 의무를 지님.
- 인종 및 국가 간의 차별, 성희롱, 남녀 차별, 장애자 차별에 대한 논의와 학교가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서술함.

### 교육부가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교육부는 협박과 차별적인 괴롭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, 학교가 반 협박과 다른 징계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응함으로 학생 비행이 학생들의 연방 민권 침해 차별을 결과 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본 서신을 교부한다.

ED is issuing the DCL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, and to remind schools that by limiting their responses to a specific application of an anti-bullying or other disciplinary policy, they may fail to properly consider whether the student misconduct also results in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students' federal civil rights.

### 민권 사무실이 시행하는 차별 금지 법령

- 1964년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 제 6조: 인종, 피부색,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금지
- 1972년 교육 개정 법률 제 9조: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
- 1973년 재 활법 504항과 1990년 미국 장애인 복지법 제 2조: 장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<sup>1</sup>

### 이와 같은 차별 금지법령에 대한 학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?

- 학교가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을 알 경우, 이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.

괴롭힘이 발견되었을 경우, 학교는 합리적으로 그 행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. 이와 같은 의무는 비행이 괴롭힘 금지 (anti-bullying) 조항에 포함되더라도, 그리고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학교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거나 그 행동을 차별의 한 형태로 여기든지 관계 없이 학교의 책임이다. **OCR 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?**

<sup>1</sup> OCR은 또한 1975의 연령 차이 금지 법령과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평등 기회 접근법을 집행한다. DCL은 이와 같은 법령들을 다루지 않는다.

OCR은 시행된 민권 법률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차별을 방지하고 다른 창의적인 접근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. 학교는 기술적 지원을 원할 경우, 관할 구역 내 OCR 집행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다. 연락처는 교육부 웹사이트 <http://wdcrobcollp01.ed.gov/CFAPPS/OCR/contactus.cfm>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차별에 대한 항의는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가 인종, 피부색, 출신 국가, 성별, 장애, 또는 나이에 의거해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.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조직이은 그 제기한 차별의 희생물이 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불평을 할 수 있다. OCR에 항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<http://www2.ed.gov/about/offices/list/ocr/complaintintro.html>이나 OCR의 고객 서비스 팀에게 1-800-421-3481으로 연락하면 하시리 바랍니다.